

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

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: 2021. 9. 9.

사안의 개요

- 성명불상자(정범)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B사이트에 업로드 했고,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·운영하는 A사이트 게시판에, B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함(이 사건 링크 행위)
- 검사는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(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)로 기소함

소송경과

- 링크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,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어서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(제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)

쟁 점

- 정범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웹페이지 등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전송권 침해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그 저작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